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회 구성 변경, 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회의 의결정족수 강화 등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55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제3항)	3
2.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안 제3조제6항)	8
3. 회의 의결정족수 강화(안 제15조제2항)	12
4. 회의록 작성, 방청 제도 도입(안 제15조제5항 등)	15
※ 참고자료	
1.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제출 의견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8.
3. 회부연월일 : 2025.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국회, 교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을 축소하고 위원 구성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음.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청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청과 회의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국회가 추천하는 <u>9명</u>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1. ----- <u>7명</u> -----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5명</u>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 <u>3명</u> ----- -----
3. <u>교육부차관</u>	<u><삭 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u>2명</u>	5. ----- ----- <u>3명</u>
<u><신 설></u>	<u>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장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명</u>

<u><신 설></u>	<u>5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u>
	<u>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u>
<u><신 설></u>	<u>5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u>
	<u>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	7. -----제18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u>항제1호</u> -----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국가교육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¹⁾, 21명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표자로 구분됨.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②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③ 당연직인 교육부차관을 위원에서 배제하며, ④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⑤ 교장 단체가 추천하는 1명, 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2명, 교육 학회가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하는 내용임.

1) 2025년 2월 현재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과 한국교육대학교 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이 직이 공석임.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비교 >

구 분	현행	개정안
국 회	9	7
대통령	5	3
교육부(차관)	1	-
교육감 협의체	1	1
교원단체	2	3
대교협, 전문대교협	2	2
시도지사 협의체	1	1
교장 단체	-	1
교수 단체	-	2
교육 학회	-	1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5명 줄여 정치권의 관여를 축소하고 교육부 차관을 당연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교육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교육과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비중을 높여 위원회의 교육분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사안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구성 다변화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국회·대통령 추천 인원 축소와 관련하여, 현재 법 제3조가 국회 추천 위원 중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각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바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중 타 직능군은 1명에 불과하게 되므로, 지역 주민, 교원, 교육 전문가, 교육 공무원, 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관계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교육부 차관의 위원 제외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기능 및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비상임위원으로 교육부 차관을 둘 이유가 상당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는 현장 및 관계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안건 심의와 의결 사항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교육청의 대표자가 위원으로서 심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교원단체 위원 확대 및 교장·교수 관련 단체 위원 추가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비상임위원 중 33.3%(6명/18명)가 특정 직능군(교사·교수)으로 구성되므로, 그 비율이 과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대표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 취지인 사회적 합의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위원 추가와 관련하여서는 교육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나, 성격이 상이한 교육

관련 학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계 전반을 아울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회를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참고로, 과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다음과 같은 위원구성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 과거 제정안 위원구성 비교 >

구 분	박홍근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박경미 의원안	유성엽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전희경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	강민정 의원안	정경희 의원안
국 회	9	11	6	4	8	8	8	8	7	12
대통령	4	4	3	3	5	17	3	5	3	13
교육부	-	-	-	-	1	-	1	1	1	-
교육감 협의체	-	-	1	1	1	-	-	1	1	-
고등교육 관련 단체	-	-	3	-	2	-	-	2	2	-
교원단체	2	-	2	3	2	-	-	2	2	-
학부모 단체 등	-	-	3		-	-	-	-	-	-
지방자치 단체	-	-	-	-	-	-	-	2	1	-
총계	15	15	20	11	19	25	20	21	17	25

2.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안 제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④·⑤ (생략)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⑦·⑧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인사청문 제도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도덕적 권위,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조망 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서,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권이 편중됨에 따라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학연·지연에 입각한 정실인사 또는 편중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행 「국회법」 제46조의3²⁾은 ①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같은 법 제65조의2³⁾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국무위원 등의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 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 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 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3)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4),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5)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등6)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인바,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5)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직위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인 의안 제출권이 있는 국무위원 기관이 아닌 점, ②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 정부, 교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기관 및 분야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므로 구조적으로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교육비전 수립, 중장기 정책 방향의 설정 등 거시적인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특정 직책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는 해당 공직의 직급과 역할,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하는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여부 결정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7)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제출의견 [참고자료1] 첨부

출석정족수의 수를 달리하거나, 의결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찬성정족수를 가중하는 등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구성원을 참여시킴으로써 회의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하게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로 운영되어 그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의요건은 국가교육위원회와 동일(국민권익위원회)하거나,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으며, 의결요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반안건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와 동일(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보다 완화된 수준(국민권익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고, 국민권익위원회만이 예외적으로 중요한 안건(기존 의결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로 규정하고 있음.

< 유사 위원회 정족수 비교 >

구분	의결정족수	근거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국민권익위원회	(개의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요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 (기존 의결 변경)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강화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의결정족수 강화 시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안건에 대하여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족수의 기준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의결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헌법상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일반 의결정족수)⁸⁾, 국회의원 제명안, 헌법개정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에 대하여 강화된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있음.

< 국회 주요 안건 의결정족수 >

구분	안건 및 의결정족수
일반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 의결정족수	(국회의원 제명안, 헌법개정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자격 상실 결정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법률안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무총리 등 탄핵소추안, 계엄해제 요구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무제한토론 강제종료안 의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8) 8)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회의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는 점, 타 법률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은 헌법상 법률안 재의요구, 의원 제명, 탄핵소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 핵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회의록 작성, 방청 제도 도입(안 제15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회의) ③·④ (생략)	제15조(회의)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u>작성·보존</u> 하여야 한다.	⑤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속기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u> ----- -----.
<신설>	1. <u>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u>
<신설>	2. <u>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u>
<신설>	3. <u>제4항에 따른 회의참석자의 성명</u>
<신설>	4. <u>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u>
<신설>	5. <u>표결 수</u>
<신설>	6. <u>위원장의 보고</u>
<신설>	7. <u>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신설>	⑥ <u>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신설>	⑦ <u>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u>
⑥ (생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공공기관 기록물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9)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10)에 따라 해당 회의록에는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 회의개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5조제5항 역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¹¹⁾에 대한 회의록¹²⁾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성명 등 회의개요,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의결 사항 등 회의결과와 함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¹³⁾.

한편, 현재 공개되고 있는 회의록은 속기록 방식이 아니라 회의내용을 정리한 형태이며, 발언자의 성명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등 회의록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회의록 작성·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회의록을 속기록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회의일시, 출석위원 및 참석자 성명, 상정안건과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 안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11)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가 아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포함되지 않음.

12) 2025년 2월 현재 제1차~제41차 회의의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13)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하는 회의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명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 상정안건명
5. 주요 안건내용 및 토론내용
6. 의결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이미 속기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¹⁴⁾¹⁵⁾,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고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공개 회의의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하여야 함¹⁶⁾.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회의록 기재 사항 대부분은 현행 운영규칙 상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다만,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현재 논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공개하고 있으므로 회의록을 발언자의 실명을 포함한 속기록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4)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등) ③ 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5)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16쪽 각주 9 참고) 후단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해당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를 생산하여야 함.

16)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회의록 등의 공개) ② 위원회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참고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속기록과 회의록을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별 인권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그 외에 개정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의 방청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방청 제도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국회법」 17)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방청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의 회의 방청에 관한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19)에 따른 방청 규정 등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의 경우 신분증 제시, 방청권 발급 방청인 수 제한 등 보다 세

17) 「국회법」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8조(방청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

부적인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방청 제도 관련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한 회의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학부모 및 학생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초기 논의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위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운영상 안전의 공개 여부가 회의 당일에 논의하여 결정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당일 방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의록 등을 통한 회의 공개가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6

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제출 의견

① 교육부 : 안 제3조제3항제3호 관련(신중검토)

-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부 차관 유지 필요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국교위 수립·의결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을 포함한 교육현장, 관계 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특히, 미래국가교육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 교육전반을 포괄하므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 총괄,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부’가 참여하는 것이 현장 체감도 높은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후 관련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교육부차관이 국교위 위원으로 참여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조문 제4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취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제안하고 반영하기 위함이라 판단됨
- 따라서 중앙-지방의 균형있는 참여와 역할을 고려할때 교육부차관을 위원으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임

② 대구교육청 :

- 안 제3조제3항 각 호 관련(현행유지)
 -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및 균형감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유지 필요
 - 법률에 근거한 법적 지위 보장과 교원 권익 대변의 대표성을 가

진 교원단체와 달리, 교장·교수·학회 등 교육 관련 각종 단체의 경우, 법적 기반과 대표성을 띤 단체가 없어 단체 지정 및 대표자 추천에 한계를 가짐. 또한 특정 단체 지정 시 교육 현장에 심각한 갈등 양산 우려

- 안 제3조제6항 단서 관련(현행유지)

-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정책심의·조정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이 법적 규제 및 행정처분 권한이 없음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정책심의·조정 기구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과 동등한 요건 부여로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인사청문 절차 불필요

- 안 제15조제2항 단서 관련(현행유지)

-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가의 교육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적기에 마련되어야 하나, 의결 조건 상향 시 국가교육위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기 마련에 상당한 차질로 국가 교육경쟁력 약화 우려
- 또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의결 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혼선 초래
- 아울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의 정당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 조건을 상향하기 보다,
-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현장 의견과 전문위원회 및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완성도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경기교육청 :

- 안 제3조제3항 제3호 관련(현행유지)
 -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행 유지
- 안 제3조제3항 제5호 관련(현행유지)
 - 국가교육위원회의 균형 있는 심의·운영을 위해 현행 유지
- 안 제3조제3항 제5의2호 내지 5의4호 관련(현행유지)
 - 교장, 교수, 학회 등 각종 교육 관련 단체의 경우 대표성을 지닌 단체가 없어 대표단체 및 대표자 추천에 이견 및 한계가 있음
- 안 제3조제6항 관련(현행유지)
 -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달리 법적 위반 시 제재, 규제,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대통령 소속 정책조정·심의 기구임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소속 정책심의·조정기구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요건 방식을 따라 인사청문 불필요
- 안 제15조제2항 관련(현행유지)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결 단서를 상향하는 경우, 합의 과정의 난항 예상되어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적기에 수립·시행에 차질로 교육 경쟁력 약화 우려
- 안 제15조제5항 관련(현행유지)
 -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중대성,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보존할 경우 위원들이 의사발언에 대한 부담감 및 내·외부 압력 등으로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장애요소 작용 우려

④ 대구보건대학교

- 안 제3조제3항 관련(기존법안 유지)
 -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의견은 기존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단체를 보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각 1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기존법안 유지 의견
- 안 제3조제6항 단서 관련(기존법안 유지)
 - ②항에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이 잘 명시되어 있고, ③항에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포함)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추천하고 있다. 위 자격요건을 갖춘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므로 위원장의 인사청문 과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제2항 관련(수정)
 - 위원 구성상 정치적 중립이라 할지라도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공정하게 구성되는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은 타당하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은 합의를 이루기 힘들어 현행처럼 다수결원칙이 민주적이라 사료됨

⑤ 경북대학교

- 안 제3조제3항제3호 관련(교육부차관 조항 존치)
 - (국교위의 주요업무) 국가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 및 정책방향 설정, 교육관련 중요 업무 심의(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원 양성 및 임용 등)
 - (교육부차관 위원회 참석 필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설명 및 위원과의 소통기회 제공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안 제3조제6항 단서(단서조항 삭제)
 -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정치적 논쟁 심화)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보다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정당의 주요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음. 국교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회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할 수 있음

⑥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 안 제15조제2항 관련
 - (최고위원회 신설) 교육정책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동의 속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전원합의제 등과 같이 다수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의 1/3로 구성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 의결된 사안을 전원합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국교위가 제시한 방안이 사회 다수 구성원의 공감 속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최고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제3조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의결정족수 수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안을 최고위원회의 전원 합의를 거쳐 의결